

부속서 III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유보 및 비합치 조치 목록

싱가포르

목록 가

주해

1. 이 부속서의 싱가포르의 유보목록 목록 가는 제8.8조(비합치 조치 목록)와 제10.8조(유보 및 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않는 조치와 관련하여 싱가포르가 취하는 유보를 규정한다.

가. 제8.4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3조(내국민 대우)

나. 제8.5조(시장접근)

다. 제8.6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4조(최혜국 대우)

라. 제8.11조(현지주재)

마. 제10.6조(이행요건 금지), 또는

바. 제10.7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2. 유보가 적용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는 유보내용 요소에 기술된다. 유보를 해석할 때, 그 유보의 모든 요소는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3. 서비스 무역과 관련하여, 현지주재와 내국민 대우는 별개의 규율이며, 현지주재와만 불합치하는 조치는 내국민 대우에 대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다.

4. 서비스 무역과 관련된 유보와 약속은 1993년 9월 3일자 서비스 무역에 대한 시작 약속에 관한 양허표: 주해(MTN.GNS/W/164) 및 1993년 11월 30일자 서비스 무역에 대한 시작 약속에 관한 양허표: 주해: 부가규정(MTN.GNS/W/164 Add. 1)에 기술된 관련 지침과 함께 해석된다.

5. 목록 가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하위분야를 지칭한다.

다. **산업분류**는 적용 가능한 경우, 잠정 중앙상품분류(통계문서시리즈 M No. 77, 국제 경제사회국, 유엔 통계사무소, 뉴욕, 1991)에서 사용되는 잠정 CPC 코드에 따라 비합치 조치의 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를 지칭한다.

라. **관련의무**는 유보된 의무(시장접근,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현지주재, 이행 요건 금지, 그리고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를 명시한다.

마. **유보내용**은 유보가 적용되는 비합치 조치를 규정한다. 그리고,

바. **조치근거**는 투명성 목적상 그 유보가 적용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여기에 규정된 조치는 한정적이지 않다.

6. 이 목록에서 서비스 공급이 관련 규제 당국의 허가나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모든 경우, 그 허가 또는 승인 절차는 비자동적이고 사안별 평가를 요구하며 규제 당국이 그 결정에 대하여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7. 이 목록에서의 어떠한 기업 또는 실체에 대한 언급은 어떠한 승계 기업 또는 실체에도 적용되며, 그 승계 기업 또는 실체는 그 기업 또는 실체에 관련한 비합치 조치의 모든 목록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8. 다른 당사자들의 유보목록은 제8장(서비스 무역) 또는 제10장(투자)에 따른 싱가포르의 약속이나 의무를 해석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

1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비거주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기관의 싱가포르 달러 대출에 부과되는 다음의 제약으로 인하여, 비거주 금융기관은 특정 상황에서 거주 금융기관으로부터 5 백만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하여 차입하지 못할 수 있다.</p> <p>금융기관은 다음의 경우 어떠한 비거주 금융기관에게도 비거주 금융기관당 5 백만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하는 신용 공여를 제공하지 않는다.</p> <p>(a)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싱가포르 달러 수익이 싱가포르 외 지역에서 사용될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그러한 자금이 인출 시점에 또는 해외 송금 전에 외화로 스왑 또는 전환되는 경우, 또는 (ii) 금융기관이 비거주 금융기관의 타방계정에 싱가포르 달러로 임시 당좌대월을 제공하고 2영업일 내에 그 대월금이 상환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그러한 수익이 결제불이행을 방지할 목적인 경우, 그리고 <p>(b) 싱가포르 달러 수익이 싱가포르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싱가포르 달러 수익이 싱가포르 달러 환투기에 사용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p> <p>금융기관은 수익이 인출 시점에 또는 해외 송금 전에 외화로 스왑 또는 전환되지 않는 한, 그 자금이 싱가포르 외 지역에서 사용될 경우 비거주 금융기관에 싱가포르 달러 지분 또는 채권 발행을 주선하지 않는다.</p> <p>“비거주 금융기관”이란 관련 고시에 정의된 대로 거주자가 아닌 모든 금융기관을 말한다.</p>

조치근거	: 보험법(제 142 장), 2002 년 개정, 싱가포르통화청 고시 제 109 호 은행법(제 19 장), 2008 년 개정, 싱가포르통화청 고시 제 757 호 금융회사법(제 108 장), 2011 년 개정, 싱가포르통화청 고시 제 816 호 싱가포르통화청법(제 186 장), 1999 년 개정, 싱가포르통화청 고시 제 1105 호 증권선물법(제 289 장), 2006 년 개정, 싱가포르통화청 고시 제 SFA 04-N04 호
------	-----------------------------------------------------------------------------------------------------------------------------------------------------------------------------------------------------------------------------------------------------------

2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싱가포르항만공사 또는 그 승계 기관에 대한 외국인의 총 지분보유는 49 퍼센트 한도의 적용을 받는다.</p> <p>“외국인의 총 지분보유” 는 다음에 의하여 소유된 주식의 총수로 정의된다.</p> <p>(a) 싱가포르 시민권자가 아닌 개인</p> <p>(b) 싱가포르 시민권자 또는 싱가포르 정부가 50퍼센트 이하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 또는</p> <p>(c) 싱가포르 정부가 소유하지 않거나 지배하지 않는 그 밖의 모든 기업</p>
	조치근거	:	이는 싱가포르 정부의 행정 정책이며 싱가포르항만공사의 설립 규약 및 정관에 기재되어 있다.

3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싱가포르 정부를 제외한 모든 개인 투자자는 아래에 열거된 기업 또는 그 승계 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지분 소유 제한의 적용을 받을 것이다.</p> <p>(a) 싱가포르 테크놀로지스 엔지니어링 - 15 퍼센트</p> <p>(b) 싱가포르항만공사 - 5 퍼센트</p> <p>(c) 싱가포르항공 - 5 퍼센트, 그리고</p> <p>(d) 파워가스, SP 파워그리드, SP 파워에셋, 싱가포르 LNG 공사 - 10퍼센트</p> <p>이 유보의 목적상, 이러한 기업 또는 그 승계 기관에 대한 투자자의 지분 소유에는 직접 및 간접적인 지분 소유가 모두 포함된다.</p>
	조치근거	:	이는 싱가포르 정부의 행정 정책이며 관련 기업의 설립 규약 및 정관에 기재되어 있다.

4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2014 년 상호등록법에 따라 등록이 요구되는 인, 또는 회사의 경우 그 회사의 이어나 서기가 싱가포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싱가포르에 상시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권한을 받은 대표자*가 임명되어야 한다. * 그러한 직책에 임명될 자격을 갖춘 인은 주로 (모두 현지에 주소를 둔) 싱가포르 시민권자, 싱가포르 영주권자 및 사업비자(EntrePass) 소지자이다.
	조치근거	:	2014 년 상호등록법(2014 년 법률 제 29 호) 2015 년 상호등록규정

5	분야	:	사업 서비스
	하위분야	:	건축 서비스 건축 서비스는 이득 또는 보상을 목적으로 건축 계획서, 설계도, 투사도, 디자인, 시방서, 또는 건물이나 그 일부의 건설, 확장 또는 변경에 사용하기 위한 이와 유사한 것의 준비 및 판매 또는 제공을 포함한다. 이는 건축 당국 또는 공공 당국에의 준수를 위한 건물의 증명 및 검사를 포함한다.
	산업분류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건축사위원회(BOA) 또는 그 승계 기관에 등록되고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인만이 건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된다. 건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회사, 유한책임조합 및 파트너십(다업종 회사 또는 영업의 일부로서 건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건축사위원회(BOA) 또는 그 승계 기관에서 면허를 취득한다. 면허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회사 또는 파트너십은, (a) 싱가포르에 등록된 건축사인 이사 또는 파트너의 통제 및 관리하에 있다. 다업종 회사 또는 파트너십의 경우, 건축 서비스에 관련된 회사 또는 파트너십의 사업은 싱가포르에 등록된 건축사인 이사 또는 파트너의 통제 및 관리하에 있다. 그리고 (b) 유한회사의 경우, 회사 이사의 과반수는 싱가포르에 등록된 건축사 또는 동종 전문가이다. 무한회사의 경우, 이사의 과반수는 유효한 면허증을 소지한 등록된 전문 건축설계사 또는 동종 전문가이다. 파트너십의 경우, 유효한 면허증을 소지한 싱가포르에 등록된 건축사 또는 동종 전문가가 그 파트너십의 자본 자산 및 이익에 대한 수익권을

		<p>보유한다.</p> <p>“동종 전문가”는 싱가포르에 등록된 토지 측량사와 엔지니어이다.</p>
조치근거	:	건축법(제 12 장), 2000 년 개정

6	분야	:	사업 서비스
	하위분야	:	공인회계 서비스(법정 감사를 포함한다)
	산업분류	:	CPC 86211 금융 감사 서비스 CPC 86309 그 밖의 세금 관련 서비스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공인회계사, 회계사무소, 회계회사 또는 회계유한책임조합만이 공인회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는 회계기업관리청(ACRA)에 등록되어야 하며, 자격, 경력 및 싱가포르 공인회계사협회(ISCA)의 회원자격에 관한 요건을 포함하는 회계사법상의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계사무소, 회계회사 및 회계유한책임조합은 회계사법상 회계기업관리청 이사위원회인 공인회계사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계사무소, 회계회사 또는 회계유한책임조합의 사업은 싱가포르에서의 공인회계 서비스 제공 또는 공급과 관련되는 한, 싱가포르에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공인회계사인 1 인 이상의 이사(회계회사의 경우) 또는 파트너(회계사무소의 경우)의 통제 및 관리하에 있다 ¹ .
	조치근거	:	회계사법(제 2 장) 제 2 절, 제 10 절제 1 조, 제 17 절제 3 조 d 항, 제 18 절제 3 조 c 항 및 제 18A 절제 3 조 e 항, 2005 년 개정 회계사(공인회계사) 규칙, 제 2 목록 제 7 조 회사법(제 50 장) 제 9 절, 2006 년 개정

¹ 참조: 회계사법 제 17 절, 제 18 절 및 제 18A 절

7	분야	:	사업 서비스 - 전문직 서비스
	하위분야	:	토지 측량 서비스
	산업분류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싱가포르에서 토지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모든 인은 토지측량사위원회(LSB) 또는 그 승계 기관에 등록하고, 자신의 감독 또는 인증이 필요한 토지 측량 프로젝트의 기간 동안 싱가포르에 물리적으로 체류하도록 요구된다.</p> <p>토지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모든 회사, 유한책임조합 및 파트너십은 (다업종 회사 또는 영업의 일부로서 토지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토지측량사위원회에서 면허를 획득해야 한다. 면허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회사 또는 파트너십은,</p> <p>(a) 싱가포르에 등록된 측량사인 이사 또는 파트너의 통제 및 관리하에 있어야 한다. 다업종 회사 또는 파트너십의 경우, 토지 측량 서비스에 관련된 회사 또는 파트너십의 사업은 싱가포르에 등록된 측량사인 이사 또는 파트너의 통제 및 관리하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p> <p>(b) 유한회사의 경우, 회사 이사의 과반수는 싱가포르에 등록된 측량사 또는 동종 전문가여야 한다. 무한회사의 경우, 이사 또는 회원은 싱가포르에 등록된 측량사 또는 동종 전문가이다. 파트너십의 경우, 싱가포르에 등록된 측량사 및 동종 전문가만이 파트너십의 자본 자산 및 이익에 대한 수익권을 보유할 수 있다.</p> <p>“동종 전문가”는 싱가포르에 등록된 엔지니어와 건축사이다.</p>

조치근거	:	토지측량사법(제 156 장) 제 12 절부터 제 23 절까지, 2012년 개정 토지측량사규칙 규칙 2 부터 규칙 20 까지
------	---	----------------------------------------------------------------------------

8	분야	:	사업 서비스
	하위분야	:	특허 대리인 서비스
	산업분류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싱가포르 특허청 (IPOS) 또는 그 승계 기관에 등록되고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서비스 공급자에게만 싱가포르에서 특허 대리인으로서의 사업 수행, 개업 또는 활동이 허용된다. 싱가포르에 거주하며 싱가포르에 등록된 최소 1 인의 특허 대리인을 이사 또는 파트너로 보유한 서비스 공급자에게만 싱가포르에서 특허 대리인으로서의 사업 수행, 개업 또는 활동이 허용된다.
	조치근거	:	특허법(제 221 장), 2005 년 개정

9	분야	:	사업 서비스
	하위분야	:	직업 소개 및 공급 서비스
	산업분류	:	
	관련의무	: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현지에 주재하는 서비스 공급자에게만 싱가포르에 직업소개소를 설립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배치하는 것이 허용된다.
	조치근거	:	직업소개소법(제 92 장), 2012 년 개정

10	분야	:	사업 서비스
	하위분야	:	전문 엔지니어링 서비스 전문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공공 이익 및 복지 또는 생명, 공중보건 또는 재산의 수호가 관련되거나 수반되며 엔지니어링 원칙과 데이터의 적용이 요구되는 공공 또는 민간 소유의 공익사업, 건물, 기계, 장비, 공정, 작업 또는 프로젝트와 관련한 공사 또는 운영에 대한 모든 전문직 서비스, 자문, 조사, 평가, 계획, 설계 또는 책임감리를 포함한다.
	산업분류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전문엔지니어위원회(PEB)에 등록된 인 또는 위원회에서 면허를 받은 업체에게만 싱가포르에서 토목, 전기 및 기계 엔지니어링과 같은 규정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전문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싱가포르에서 당국의 승인을 요하는 전문 엔지니어링 작업의 이행은 프로젝트가 이행되는 기간 동안 싱가포르에 물리적으로 체류하는 전문 엔지니어에 의하여 수행된다. 전문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회사, 다업종 파트너십 및 유한책임조합은 전문엔지니어위원회 또는 그 승계 기관으로부터 면허를 획득한다. 면허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회사, 다업종 파트너십 또는 유한책임조합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다. (a) 전문 엔지니어 서비스에 관련된 회사, 다업종 파트너십 또는 유한책임조합의 사업은 싱가포르에 등록된 전문 엔지니어이자 유효한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이사 또는 파트너의 통제 및 관리하에 있으며, 회사 또는 유한책임조합의 경우, 그 회사의 이사회 또는 그 유한책임조합의 파트너의 결의에 따라 그 회사 또는 유한책임조합을 대표하여 엔지니어링에

		<p>대한 모든 최종 결정을 내릴 권한을 부여받은 이사 또는 파트너의 통제 및 관리하에 있다. 그리고,</p> <p>(b) 유한회사 또는 무한회사의 경우, 이사의 51 퍼센트 이상이 싱가포르에 등록된 전문 엔지니어 또는 동종 전문가이다. 다업종 파트너십의 경우, 싱가포르에 등록된 전문 엔지니어 또는 동종 전문가가 그 파트너십의 자본 자산 및 이익에 대한 수익권을 보유한다. 유한책임조합의 경우, 파트너는 싱가포르에 등록된 전문 엔지니어 또는 동종 전문가, 허가된 회사 또는 허가된 유한책임조합이다.</p> <p>“동종 전문가”는 싱가포르에 등록된 토지 측량사와 건축사이다.</p>
조치근거	:	전문엔지니어법(제 253 장) 제 10 절, 제 11 절 및 제 20 절부터 제 26 절까지, 1992 년 개정

11	분야	:	사업 서비스
	하위분야	:	부동산 서비스
	산업분류	:	CPC 82202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한 비거주 재산 관리 서비스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센토사개발공사 또는 그 승계 기관에게만 센토사 휴양섬 및 그 수로의 개발과 관리가 허용된다. 싱가포르 국토청, 국립공원위원회 또는 그 승계 기관에게만 싱가포르 남섬의 개발 및 관리가 허용된다. 이 유보의 목적상, “싱가포르 남섬”은 세인트존스아일랜드, 라자루스아일랜드, 쿠수아일랜드, 폴라우 령깃, 시스터즈아일랜드, 폴라우 한투, 폴라우 비올라, 폴라우 중 그리고 폴라우 테쿠코이다.
	조치근거	:	센토사개발공사법(제 291 장) 제 9 항, 1998 년 개정 싱가포르국토청법(제301장) 제6절제1조e항ii호, 2002 년 개정

12	분야	:	사업 서비스
	하위분야	:	민간 조사 서비스 비무장 경비 서비스
	산업분류	:	CPC 87301 조사 서비스 CPC 87302 보안 자문 서비스 CPC 87305 경비 서비스(비무장 보안 경비 서비스에만 적용된다)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싱가포르는 필수적인 안보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민간보안산업법에 따라 규제되는 비무장 경비 서비스, 민간 조사 서비스 및 보안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조치근거	:	민간보안산업법(제 250A 장), 2008 년 개정

13	분야	:	교육 서비스
	하위분야	:	의사 수련에 관련된 고등 교육 서비스
	산업분류	:	CPC 92390 그 밖의 고등 교육 서비스 (의사 수련에 관련된 고등 교육 서비스에만 적용된다)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의회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교육부에 의하여 지정된 현지 고등교육기관에게만 싱가포르에서 의사 수련을 위한 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허용된다. 현재는 싱가포르국립대학교와 난양기술대학교에게만 싱가포르에서 의사 수련을 위한 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허용된다.
	조치근거	:	의료등록법(제 174 장) 제 2 절, 제 3 절, 제 34 절 및 제 35 절, 2014 년 개정 사립교육법(제 247A 장) 2011 년 개정

14	분야	:	보건 및 사회 서비스
	하위분야	:	의료 서비스 약국 서비스 분만 및 관련 서비스, 간호 서비스, 의료보조 서비스 및 동종 보건 서비스 ² 검안사 및 안경사
	산업분류	:	-
	관련의무	: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인에게만 다음 서비스의 제공이 허용된다: 의료 서비스, 약국 서비스, 분만 및 관련 서비스, 간호 서비스, 의료보조 서비스 및 동종 보건 서비스, 그리고 검안 및 안경제작 서비스.
	조치근거	:	의료등록법(제 174 장), 2014 년 개정 약사등록법(제 230 장), 2008 년 개정 의약품법(제 176 장), 1985 년 개정 2016 년 보건 제품(소매 약국 면허) 규정 간호사 및 조산사에 관한 법률(제 209 장), 2012 년 개정 동종보건전문인법(제 6B 장), 2013 년 개정 검안사 및 안경사에 관한 법률(제 213A 장), 2008 년 개정

² 물리치료 서비스를 포함한다.

15	분야	:	수입, 수출 및 무역 서비스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관련의무	: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현지에 주재하는 서비스 공급자에게만 수입 또는 수출 허가증, 원산지 증명서 또는 관련 당국에서 발급하는 그 밖의 무역 서류 신청이 허용된다.
	조치근거	:	수출입관리법(제 272A 장), 1996 년 개정 수출입관리법에 관한 규정

16	분야	:	통신 서비스
	하위분야	:	통신 서비스
	산업분류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기간통신사업자와 서비스기반사업자는 회사법(제50장, 2006년 개정)에 따라 현지에서 구성되어야 한다.</p> <p>“기간통신사업자”란 그 밖의 허가된 통신사업자, 기업 고객 또는 일반 공중을 포함하는 제3자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업장 경계 밖에서 모든 형태의 통신망, 시스템 및 설비를 구축하는 운영자이다.</p> <p>“서비스기반사업자”란 제3자에게 자신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 서비스를 재판매하기 위하여 싱가포르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의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 망 요소(예를 들어 전송 용량 및 교환 서비스)를 임차하는 사업자이다.</p> <p>부여되는 허가 건수는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의 가용성과 같은 자원 제약에 의해서만 제한될 것이다. 스펙트럼 제약을 고려하여, 무선 기술에 기반한 망 구축에 관심이 있는 당사자들은 입찰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p>
	조치근거	:	2016년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법(2016년 법률 제22호) 통신법(제323장), 2000년 개정

17	분야	:	전력 공급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전력 생산자에게는 소비자에 전력을 직접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에너지시장청이 허가한 싱가포르 전력도매시장 사업자를 통해서만 전력을 판매한다. 싱가포르 국외에 소재한 전력 생산자가 싱가포르 전력도매시장에 공급한 누적 전력량은 600MW를 초과하지 않는다. 싱가포르는 전력 공급 기준량 600MW를 변경 또는 축소할 수 있는 권리와 유연성을 유보한다.
	조치근거	:	전기법(제 89A 장) 제 6 절제 1 조 및 제 9 장제 1 조, 2002 년 개정

18	분야	:	전력 공급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시장 공급 서비스 면허권자에게만 다음에 대한 전력 공급이 허용된다.</p> <p>(a) 모든 가계 전력 소비자, 그리고</p> <p>(b) 월 평균 전력 소비량이 2,000kWh 미만인 비가계 전력 소비자</p> <p>현지에 주재하는 전력 소매 면허권자만 싱가포르에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p> <p>* 싱가포르 전력소매시장의 전면 자유화로(즉, 개방 전력 시장 이니셔티브) 소비자가 전력 소매 면허권자를 통해서도 전력을 구매할 수 있으므로 모든 소비자에 대한 전력 소매는 경쟁의 대상이 된다.</p>
	조치근거	:	전기법(제 89A 장) 제 6 절제 1 조 및 제 9 절제 1 조, 2002 년 개정

19	분야	:	송전 및 배전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송전 면허권자만이 싱가포르 송전망과 배전망의 소유자 및 운영자가 된다.
	조치근거	:	전기법(제 89A 장) 제 6 절제 1 조 및 제 9 절제 1 조, 2002 년 개정

20	분야	: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하위분야	:	구내 소비를 위한 음료 제공 서비스 싱가포르 정부가 운영하는 식사 시설 내 식사 제공 서비스 식품 소매 판매
	산업분류	:	CPC 643 구내 소비를 위한 음료 제공 서비스 CPC 642 음식 제공 서비스 CPC 6310 식품 소매 판매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싱가포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만이 그들의 개인 자격으로 정부 운영 시장 또는 호커 센터에서의 가판대 운영을 위한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싱가포르에서 식품 또는 음료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싱가포르에서 유한 회사로 설립되어야 하고, 비정부 운영 식사 시설에서 식음료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유한회사 명의로 식품매장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싱가포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만이 국립환경청 또는 국립환경청이 임명한 관리 대리인이 관리하는 호커 센터에서의 가판대 운영을 신청할 수 있다.
	조치근거	:	환경공중보건법(제 95 장), 2002 년 개정

21	분야	:	폐기물 처리, 위생 및 그 밖의 환경 보호 서비스
	하위분야	:	유해 폐기물의 수집, 처분 및 처리를 포함하는 폐기물 관리
	산업분류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구성되어야 한다. 가정 및 사업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폐기물수거업자(PWC)는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공공폐기물수거업자의 수는 싱가포르의 지리적 구역의 수에 의하여 제한된다. 산업 및 상업 폐기물의 경우 시장은 허가된 모든 일반폐기물수거업자(GWC)에게 개방된다.
	조치근거	:	환경공중보건법(제 95 장), 2002 년 개정

22	분야	:	무역 서비스
	하위분야	:	유해 물질의 유통 및 판매
	산업분류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현지에 주재하고 유효한 유해 물질 면허를 소지한 기업에게만 환경보호관리법과 환경보호관리(유해 물질)규정에 정의된 유해 물질의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된다. 싱가포르는 환경보호관리법과 환경보호관리(유해 물질)규정에 정의 또는 열거된 유해 물질 목록을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있는 권리와 유연성을 유보한다.
	조치근거	:	환경보호관리법(제 94A 장) 제 22 절, 2000 년 개정 환경보호관리(유해 물질)규정

23	분야	:	제조업 및 제조업 부수 서비스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싱가포르는 제조관리법에 따라 관세 부과, 상품 제조에 대한 제약 또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싱가포르는 제조관리법에 기재된 상품 목록을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있는 권리와 유연성을 유보한다. 기재된 상품의 현행 목록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맥주 및 흑맥주 (b) 시가 (c) 압연 철강 제품 (d) 건강제품법(제 122D 장, 2008 년 개정) 제 1 목록에 구강 치과용 껌 또는 치료용 제품으로 분류된 건강 제품이 아닌 씹는 껌, 풍선껌, 치과용 씹는 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물질 (e) 담배, 그리고 (f) 성냥
	조치근거	:	제조관리법(제 57 장), 2001 년 개정

24	분야	:	무역 서비스
	하위분야	:	유통 서비스 소매 서비스 도매 서비스
	산업분류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현지에 주재하는 서비스 공급자에게만 의약품법과 건강제품법에 정의된 의료 및 건강 관련 제품과 재료의 도매, 소매 및 유통 서비스 공급이 허용된다. 싱가포르는 의약품법과 건강제품법에 정의 또는 열거된 의료 및 건강 관련 제품과 재료의 목록을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있는 권리와 유연성을 유보한다.
	조치근거	:	의약품법(제 176 장), 1985 년 개정 건강제품법(제 122D 장), 2008 년 개정

25	분야	:	제조가스 및 천연가스의 운송 및 유통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가스 운송업자 면허를 보유한 인에게만 제조가스 및 천연가스의 운송 및 유통이 허용된다. 싱가포르 시장의 규모를 감안하여 하나의 가스 운송업자 면허만 발급된다.
	조치근거	:	가스법(제 116A 장), 2002 년 개정

26	분야	:	사업 서비스
	하위분야	: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승용차, 화물 운송 차량 및 그 밖의 육로 운송 장비에 관한 리스 또는 임대 서비스
	산업분류	:	CPC 83101, 83102, 83105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승용차, 화물 운송 차량 및 그 밖의 육로 운송 장비에 관한 리스 또는 임대 서비스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싱가포르 거주자가 싱가포르에서 차량을 이용할 의도로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승용차, 화물 운송 차량 및 그 밖의 육로 운송 장비를 국경 간 임대하는 것은 금지된다.
	조치근거	:	도로교통법(제 276 장), 2004 년 개정

27	분야	:	운송 서비스
	하위분야	:	해상운송 서비스 화물취급 서비스 도선 서비스 싱가포르 항구 또는 싱가포르 영해에 접안 중인 선박에 대한 해수담수 공급
	산업분류	:	CPC 741 화물취급 서비스 CPC 74520 도선 및 접안 서비스(도선 서비스에만 적용된다) CPC 74590 그 밖의 수상운송지원 서비스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싱가포르항만공사 및 주룽항만공사 또는 그들 각각의 승계 기관에게만 화물취급 서비스의 제공이 허용된다. PSA 머린 유한회사 또는 그 승계 기관에게만 싱가포르 항구 또는 싱가포르 영해에 접안 중인 선박에 대한 도선 서비스 제공 및 해수담수 공급이 허용된다.
	조치근거	:	싱가포르해운항만청법(제 170A 장) 제 81 절, 1997 년 개정

28	분야	:	운송 서비스
	하위분야	:	해상 운송 서비스
	산업분류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현지 서비스 공급자에게만 순항선 및 페리 터미널의 운영과 관리가 허용된다. 현지 서비스 공급자는 싱가포르 시민권자 또는 싱가포르 시민권자가 50 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한 법인이다.
	조치근거	:	싱가포르해운항만청법(제 170A 장) 제 81 절, 1997 년 개정

29	분야	: 운송 서비스
	하위분야	: 해상운송 서비스 - 싱가포르 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등록
	산업분류	: CPC 74590 그 밖의 수상운송지원 서비스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싱가포르 법인만이 싱가포르 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등록할 수 있다. 싱가포르 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등록하고자 하는 모든 싱가포르 법인은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선박관리인을 임명한다. 싱가포르 시민권자 또는 싱가포르 영주권자가 과반을 소유하지 않는 싱가포르 법인이 소유한 배 또는 선박은 총톤수 최소 1,600 톤이고 자항능력이 있어야 싱가포르 국기를 게양하고 등록될 수 있다. 이 유보의 목적상, 싱가포르 법인은 현지에서 구성된 회사이다.
	조치근거	: 해운법(제 179 장), 1996 년 개정 해운(선박등록) 규정

30	분야	:	운송 서비스
	하위분야	:	해상운송 서비스 - 선원 서비스
	산업분류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싱가포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이 싱가포르 해운항만 청법에 정의된 대로 싱가포르 선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조치근거	:	싱가포르해운항만청법(제 170A 장) 제 40 절, 1997 년 개정 싱가포르해운항만청(선원 등록 및 고용)규정

31	분야	:	통신 서비스
	하위분야	:	통신 서비스 싱가포르 영역(.sg)에 해당하는 인터넷 국가코드최상위도메인(ccTLD)에서의 도메인 이름 할당 정책
	산업분류	:	-
	관련의무	: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등록자는 회사법(제50장, 2006년 개정)에 따라 구성된 회사 또는 등록된 외국 회사여야 한다.
	조치근거	: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법(2016년 법률 제 22호) 통신법(제 323장), 2000년 개정 자신의 영역에 해당하는 국가코드최상위도메인에 대한 주권 정부의 최종 권한을 인정하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 기구(ICANN)

32	분야	:	자연보호구역 서비스(국립공원, 자연보호구역 및 공원을 포함한다)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관련의무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국립공원위원회 또는 그 승계 기관은 국립공원위원회법에 정의된 대로 국립공원, 자연보호구역 및 공원을 통제, 운영 및 관리할 권한을 갖는 유일한 기관이다.
	조치근거	:	국립공원위원회법(제 198A 장), 2012 년 개정 공원수목법(제 216 장), 2006 년 개정

목록 나

주해

1. 이 부속서의 싱가포르의 유보목록 목록 나는 제8.8조(비합치 조치 목록)와 제10.8조(유보 및 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않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싱가포르가 취하는 유보를 규정한다.

가. 제8.4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3조(내국민 대우)

나. 제8.5조(시장접근)

다. 제8.6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4조(최혜국 대우)

라. 제8.11조(현지주재)

마. 제10.6조(이행요건 금지), 또는

바. 제10.7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2. 유보가 적용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는 유보내용 요소에 기술된다. 유보를 해석할 때, 그 유보의 모든 요소는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3. 서비스 무역과 관련하여, 현지주재와 내국민 대우는 별개의 규율이며, 현지주재와만 불합치하는 조치는 내국민 대우에 대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다.

4. 서비스 무역과 관련된 유보와 약속은 1993년 9월 3일자 서비스 무역에 대한 시작 약속에 관한 양허표: 주해(MTN.GNS/W/164) 및 1993년 11월 30일자 서비스 무역에

대한 시작 약속에 관한 양허표: 주해: 부가규정 (MTN.GNS/W/164 Add. 1) 에 기술된 관련 지침과 함께 해석된다.

5. 목록 나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다. **산업분류**는 적용 가능한 경우, 잠정 중앙상품분류(통계문서시리즈 M No. 77, 국제경제사회국, 유엔 통계사무소, 뉴욕, 1991)에서 사용되는 잠정 CPC 코드에 따라 비합치 조치의 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를 지칭한다.

라. **유보유형**은 유보된 의무(시장접근,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현지주재, 이행요건 금지, 그리고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를 명시한다.

마. **유보내용**은 유보가 적용되는 비합치 조치를 규정한다. 그리고

바. **기존조치**는 투명성 목적상 유보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는 기존의 조치를 적시한다. 이에 규정된 조치는 한정적이지 않다.

6. 이 목록에서 서비스 공급이 관련 규제 당국의 허가나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모든 경우, 그 허가 또는 승인 절차는 비자동적이고 사안별 평가를 요구하며 규제 당국이 그 결정에 대하여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7. 이 목록에서의 어떠한 기업 또는 실체에 대한 언급은 어떠한 승계 기업 또는 실체에도 적용되며, 그 승계 기업 또는 실체는 그 기업 또는 실체와 관련한 비합치 조치의 모든 목록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8. 다른 당사자들의 유보목록은 제8장(서비스 무역) 또는 제10장(투자)에 따른 싱가포르의 약속이나 의무를 해석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

1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유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싱가포르의 자연인의 주재, 또는 이민, 입국 또는 제9장(자연인의 일시 이동)의 적용대상이 되는 일시적 체류를 포함한 그 밖의 자연인의 이동에 의한 서비스 공급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

2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유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싱가포르는 환경보호, 자연보호구역 및 국립공원과 관련된 정책뿐만 아니라 자신의 토지 용도지역지구제, 토지 이용, 도시계획정책, 개발통제, 보호 및 보존 정책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실시될 수 있는 유형의 활동 또는 토지의 개발이나 이용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계획법(제 232 장), 1998 년 개정

3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유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싱가포르는 병원 및 폴리클리닉과 같이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보건 기관에 의한 보건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하며, 이는 이러한 보건 기관, 병원 및 폴리클리닉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
	기존조치	:	-

4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유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싱가포르는 사회 서비스, 사회 보장, 공공 훈련, 공공 법집행, 구급차 서비스, 교정 서비스 및 소방 서비스의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

5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유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싱가포르는, 국가가 소유한 부동산의 양도 및 매각을 포함하여, 그 양도 및 매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국유토지법(제 314 장), 1996 년 개정

6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유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싱가포르는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a) 정부 권한의 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민간 분야로 전부 또는 일부 양도 (b) 싱가포르 정부가 전부 소유한 기업에 대한 자신의 보유 지분 또는 자산의 매각, 그리고 (c) 싱가포르 정부가 부분 소유한 기업에 대한 자신의 보유 지분 또는 자산의 매각
	기존조치	:	-

7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유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싱가포르의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는 부동산의 소유, 매도, 매수, 개발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포함한다. 이 유보는 부동산 자문 서비스, 부동산 대리 서비스, 부동산 경매 서비스, 부동산 평가 서비스 및 소유되거나 임대된 비거주용 재산에 관련된 임대나 리스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조치	:	거주부동산법(제 274 장), 2009 년 개정 국유토지법(제 314 장), 1996 년 개정 주택개발법(제 129 장), 2004 년 개정 주룡타운공사법(제 150 장), 1998 년 개정 공동주택정책법(제 99A 장), 1997 년 개정 계획법(제 232 장), 1998 년 개정

8	분야	:	국가전자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유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싱가포르는 국가전자시스템에 의한 재산권적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

9	분야	:	무기 및 폭발물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유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싱가포르는 무기 및 폭발물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무기폭발물법(제 13 장), 2003 년 개정

10	분야	:	<p>방송 서비스</p> <p>방송은 대중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의한 청각적 또는 시각적 프로그램 신호의 수신이나 디스플레이를 목적으로 어떠한 기술을 통한 표시 또는 신호를 전송하는 것으로 정의된다.</p>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유보유형	:	<p>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p> <p>시장접근(제 8.5 조)</p> <p>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p> <p>현지주재(제 8.11 조)</p> <p>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p> <p>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p>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싱가포르는 싱가포르 국내 시청자가 수신할 수 있거나 싱가포르에서 제공되는 방송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고 방송 서비스와 관련한 전파 분배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이 유보항목은 허가된 방송 서비스를 최종 소비자에게 송신하는 단순한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p> <p>영화, 비디오 녹화물 및 녹음물의 제작, 배급 및 공개 디스플레이에 대한 약속은 방송에 관련된 모든 방송 및 시청각 서비스와 대상물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유보된 서비스의 예시에는 공중파 방송, 케이블 및 유료 텔레비전, 직접위성방송 및 텔레텍스트가 포함된다.</p>
	기존조치	:	-

11	분야	:	오락 및 문화 서비스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유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싱가포르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와 그 밖의 문화 서비스를 포함하는 창작 예술, 문화 유산 및 그 밖의 문화 산업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창조적 예술품”은 공연예술(연극, 무용 및 음악을 포함한다), 시각예술 및 공예, 문학,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 라디오, 창의적인 온라인 콘텐츠, 도착전통관습 및 현대적 문화표현물, 그리고 디지털 양방향 매체 및 개별 예술형식 분류의 초월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혼성예술 작업을 포함한다. “문화재”는 무형문화재 뿐만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기록보관소 및 그 밖의 문화유산 수집기관이 문서화하고 보존하고 전시하는 수집품을 포함하는 민족학적, 고고학적, 역사적,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기술적 동산문화재나 부동산문화재를 포함한다.
	기존조치	:	-

12	분야	:	사업 서비스
	하위분야	:	특허대리인 서비스
	산업분류	:	-
	유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싱가포르는 특허대리인의 허용, 등록 및 자격과 같은 목적으로 교육 및 전문적인 자격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특허법(제 221 장), 2005 년 개정

13	분야	:	사업 서비스
	하위분야	:	무장호위 서비스 및 장갑차량 서비스 무장경비 서비스
	산업분류	:	CPC 87305 경비 서비스
	유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싱가포르는 무장호위, 장갑차량 및 무장경비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경찰법(제 235 장) 제 9 부, 2006 년 개정

14	분야	:	사업 서비스
	하위분야	:	베탱 및 도박 서비스
	산업분류	:	-
	유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싱가포르는 베탱 및 도박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베탱법(제 21 장), 2011 년 개정 공공도박장법(제 49 장), 1985 년 개정 사설복권법(제 250 장), 2012 년 개정 원격도박법(2014 년 법률 제 34 호) 카지노규제법(제 33A 장), 2007 년 개정

15	분야	:	사업 서비스 - 전문직 서비스(법률 서비스)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유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싱가포르는 싱가포르에서의 법률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

16	분야	:	공동체, 개인 및 사회 서비스
	하위분야	:	협동조합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노동조합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산업분류	:	-
	유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싱가포르는 협동조합과 노동조합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협동조합법(제 62 장), 2009 년 개정 노동조합법(제 333 장), 2004 년 개정

17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유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테크놀로지스 엔지니어링 또는 그 승계 기관에 대한 싱가포르 정부의 지배 지분 보유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하며, 이는 싱가포르의 안보 이익 보호의 목적상 싱가포르 테크놀로지스 엔지니어링 이사회 구성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통제, 지분 매각 및 해체를 포함한다.
	기존조치	:	-

18	분야	:	신문의 배포, 발행 및 인쇄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유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싱가포르는 지분 한도와 경영권을 포함하여 신문 발간 또는 인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신문 배포는 싱가포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행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싱가포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신문은 언어로 인쇄되고 판매 또는 무료 배포를 목적으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발행된 뉴스, 정보, 사건 보도 또는 그러한 뉴스, 정보, 사건 보도나 공익 관련 사안에 대한 논평, 견해 또는 의견을 포함하는 모든 발행물을 의미하나, 싱가포르 정부에 의하여 또는 싱가포르 정부를 위하여 발행된 발행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기준조치	:	신문언론출판법(제 206 장), 2002 년 개정

19	분야	:	무역 서비스
	하위분야	:	유통 서비스 위탁 중개인 서비스 도매 서비스 소매 서비스 프랜차이징
	산업분류	:	-
	유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싱가포르는 수입금지 또는 비자동 수입허가의 적용을 받는 모든 제품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싱가포르는 싱가포르의 수입금지 또는 비자동 수입허가 제도를 규율하는 법, 규정 및 그 밖의 조치에 규정된 제품 목록을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

20	분야	:	교육 서비스
	하위분야	:	초등교육 서비스 중등교육 서비스
	산업분류	:	CPC 921 초등교육 서비스 CPC 92210 일반중등교육 서비스 CPC 92220 고등교육 서비스(싱가포르 교육 제도상 주니어 칼리지 및 대학준비학교에만 적용된다)
	유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싱가포르는 체육 교육 서비스를 포함하여 싱가포르 시민권자를 위한 초등교육, 일반 중등 및 고등(싱가포르 교육 제도상 주니어 칼리지 및 대학준비 학교에만 적용된다) 교육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준조치	:	교육법(제 87 장), 1985 년 개정 행정지침 사립교육법(제 247A 장), 2011 년 개정

21	분야	:	보건 및 사회 서비스
	하위분야	:	의료 서비스 약국 서비스 분만 및 관련 서비스, 간호 서비스, 의료보조 서비스 및 동종보건 서비스 ³ 검안사 및 안경사
	산업분류	:	-
	유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싱가포르는 다음을 포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자의 수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의료 서비스, 약국 서비스, 분만 및 관련 서비스, 간호 서비스, 의료보조 서비스 및 동종보건 서비스, 그리고 검안 및 안경제작 서비스. 싱가포르는 다음을 포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자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의료 서비스, 약국 서비스, 분만 및 관련 서비스, 간호 서비스, 의료보조 서비스 및 동종보건 서비스, 그리고 검안 및 안경제작 서비스.
	기존조치	:	동종보건전문인법(제6B장), 2013년 개정 의료등록법(제174장), 2014년 개정 약사등록법(제230장), 2008년 개정 의약품법(제176장), 1985년 개정 2016년 보건 제품(소매 약국 면허) 규정 간호사 및 조산사에 관한 법률(제209장), 2012년 개정 검안사 및 안경사에 관한 법률(제213A장), 2008년 개정

³ 물리치료 서비스를 포함한다.

22	분야	: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하위분야	:	정부 기록에 대한 기록보관 서비스
	산업분류	:	CPC 96312 기록보관 서비스
	유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싱가포르는 국립문화유산위원회 또는 그 승계 기관에 따라 명시된 정부 기록에 대한 기록보관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

23	분야	: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하위분야	:	박물관 서비스 유적지, 기념물 및 건물 보존
	산업분류	:	-
	유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싱가포르는 박물관 서비스와 유적지, 기념물 및 건물 보존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

24	분야	:	외국인 피고용인 기숙사 서비스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유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싱가포르는 외국인 피고용인을 위한 기숙사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

25	분야	:	폐수 서비스
	하위분야	:	고형 폐기물과 폐수의 수집, 처분 및 처리를 포함하는 폐수 관리
	산업분류	:	CPC 9401 폐수 서비스
	유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싱가포르는 폐수의 수집, 처리 및 처분을 포함하여, 폐수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폐수 및 위생 작업에 관한 관행 법규집 폐수 및 배수에 관한 법(제294장), 2001년 개정

26	분야	:	폐수 및 폐기물 처분, 위생 및 그 밖의 환경보호 서비스
	하위분야	:	그 밖의 환경보호 서비스
	산업분류	:	CPC 9409 -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환경보호 서비스
	유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싱가포르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그 밖의 환경보호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

27	분야	:	우편 서비스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유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싱가포르는 우편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

28	분야	:	통신 서비스 ⁴
	하위분야	:	통신 서비스
	산업분류	:	-
	유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싱가포르는 이 목록에 열거된 제한, 조건 및 자격의 적용을 받는 다음의 분야와 하위분야를 제외하고, 통신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a) 재판매를 포함하는 기본 통신 서비스 ⁵ (기간통신 및 서비스기반통신): (i) 공중 교환 서비스 ⁶ (국내 및 국제) (ii) 전용 회선 서비스(국내 및 국제) (b) 재판매를 포함하는 이동 서비스 ⁷ (기간통신 및 서비스기반통신): (i) 공중 이동 데이터 서비스(PMDS) (ii) 공중 주파수 공용 서비스 PTRS)

⁴ 대중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의한 청각적 또는 시각적 프로그램 신호의 수신이나 디스플레이를 목적으로 어떠한 기술을 통한 표시 또는 신호를 전송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방송 서비스는 통신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다른 당사자의 영역에서 싱가포르 영역으로의 서비스 공급의 경우, 시장접근은 허가된 사업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조건으로 한다.

⁵ 기본 통신 서비스는 위성 기술을 이용하여 제공될 수 있다.

⁶ 이는 음성, 데이터 및 팩시밀리 서비스를 포함한다.

⁷ 이동 서비스는 위성 기술을 이용하여 제공될 수 있다. 다른 당사자의 영역에서 싱가포르 영역으로의 서비스 공급의 경우, 시장접근은 허가된 사업자(들)과의 상업적 약정을 조건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iii) 공중 무선 호출 서비스(PRPS) (iv) 공중 셀룰러 이동전화 서비스 (PCMTS), 그리고 (c) 다음의 부가가치망(VAN)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전자 메일 (ii) 음성 메일 (iii)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iv) 전자적 데이터 교환, 그리고 (v)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 처리
	기존조치	: -

29	분야	:	무역 서비스
	하위분야	:	식용 음용수 공급
	산업분류	:	CPC 18000 천연수 위에 열거된 분야는 음용수 공급에 관련된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유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싱가포르는 음용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는 병에 담긴 물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존조치	:	공익사업법(제 261 장), 2002 년 개정

30	분야	:	운송 서비스
	하위분야	:	파이프라인을 통한 운송 서비스
	산업분류	:	-
	유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현지에 주재하는 서비스 공급자에게만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화학 및 석유 제품, 석유 그리고 그 밖의 관련 제품과 같은 상품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싱가포르는 이 유보의 적용을 받는 화학 및 석유 제품 및 그 밖의 관련 제품의 목록을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있는 권리와 유연성을 유보한다.
	기준조치	:	

31	분야	:	운송 서비스
	하위분야	:	항공 운송 서비스
	산업분류	:	-
	유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싱가포르는 다음의 국경간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 (b) 항공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c)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 (d) 특수 항공 서비스 (e) 지상조업 서비스, 그리고 (f) 공항 운영 서비스 <p>싱가포르는 항공 운송 및 항공 운송 관련 서비스에 대한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기존조치	:	싱가포르민간항공청법(제 41 장), 2014 년 개정

32	분야	:	운송 서비스
	하위분야	:	항공 운송 서비스
	산업분류	:	-
	유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싱가포르는 다음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a) 조사 (b) 지도 제작, 그리고 (c) 사진 촬영
	기존조치	:	

33	분야	:	운송 서비스
	하위분야	:	항공 운송 서비스 - 항공 여객 운송 항공 화물 운송
	산업분류	:	CPC 731 항공 여객 운송 CPC 732 항공 화물 운송
	유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싱가포르는 싱가포르의 양자 및 다자 간 항공 서비스 협정의 요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싱가포르 지정 항공사로서 항공 운송 서비스(여객용 및 화물용 모두)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자는 싱가포르 정부, 싱가포르 시민권자 또는 양자 모두에 의하여 실효적으로 지배되거나 실질적으로 소유되어야 할 수도 있다.
	기존조치	:	항공운항(항공 서비스 면허) 규정

34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유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싱가포르의 공항 관리자와 사업자의 투자 회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35	분야	:	운송 서비스
	하위분야	:	<p>육로 운송 서비스 - 철도 여객 운송 서비스, 도시 및 교외 정기 운송 서비스, 택시 서비스, 버스 및 철도역 서비스, 그리고 공공 운송 서비스에 관련된 발권 서비스를 포함하는 공공 운송 서비스</p> <p>공공 운송 서비스는 싱가포르에서 이동을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에 의하여 이용되고 그 구성원에게 접근이 가능한 서비스이다.</p>
	산업분류	:	-
	유보유형	:	<p>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p> <p>시장접근(제 8.5 조)</p> <p>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p> <p>현지주재(제 8.11 조)</p> <p>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p> <p>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p>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싱가포르는 공공 운송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공공 운송 서비스는 싱가포르에서 이동을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에 의하여 이용되고 그 구성원에게 접근이 가능한 서비스이다.</p>
	기존조치	:	<p>고속수송체계법(제263A장), 2004년 개정</p> <p>싱가포르육상교통청법(제158A장), 1996년 개정</p> <p>대중교통협의회법(제259B장), 2012년 개정</p> <p>도로교통법(제276장), 2004년 개정</p> <p>2015년 제3자 택시예약서비스제공자법(2015년 법률 제17호)</p>

36	분야	:	운송 서비스
	하위분야	:	육로 운송 서비스 - 철도 및 도로 화물 운송. 철도 및 도로 운송 서비스를 위한 지원 서비스
	산업분류	:	-
	유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싱가포르는 상기 규정된 육로 운송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

37	분야	:	운송 서비스
	하위분야	:	모든 운송 형태에 대한 부수 서비스
	산업분류	:	CPC 742 보관 및 창고 서비스 CPC 742** 컨테이너 스테이션 및 창고 서비스 CPC 748 화물 운송 주선 서비스 CPC 7123** 내륙 화물자동차 서비스
	유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싱가포르는 다른 당사자의 보관 및 창고, 운송 주선, 내륙 화물자동차, 컨테이너 스테이션 및 창고 서비스에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

38	분야	:	운송 서비스
	하위분야	:	해상운송 서비스 - 예선 지원, 식량·연료 공급 및 급수, 쓰레기 수거 및 밸러스트 폐기물 처리, 선석 배정 서비스, 항행 원조, 비상 보수 시설, 정박, 그리고 통신, 급수 및 전기공급을 포함하는 선박 운영에 필수적인 그 밖의 육상기반 운영 서비스
	산업분류	:	CPC 74510 항구 및 수로 운영 서비스 CPC 74520 도선 및 선박 접안 서비스 CPC 74530 항행원조 서비스 CPC 74590 그 밖의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
	유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싱가포르는 예선 지원, 식량·연료 공급 및 급수, 쓰레기 수거 및 밸러스트 폐기물 처리, 선석 배정 서비스, 항행 원조, 비상 보수 시설, 정박, 그리고 통신, 급수 및 전기공급을 포함하는 선박 운영에 필수적인 그 밖의 육상 기반 운영 서비스의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제 해상운송 운영자에 대하여 상기 항구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접근을 거부하는 조치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조치	:	싱가포르해운항만청법(제 170A 장) 제 41 절, 1997 년 개정

39	분야	:	운송 서비스
	하위분야	:	내륙 수상 운송 서비스
	산업분류	:	CPC 722 비원양 선박에 의한 운송 서비스
	유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싱가포르는 내륙 수상 운송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준조치	:	-

40	분야	:	무역 서비스
	하위분야	:	주류와 담배의 도매 및 소매 서비스
	산업분류	:	-
	유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싱가포르는 담배 제품 및 주류의 도소매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

41	분야	:	에너지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유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싱가포르는 원자력에 의하여 생산되는 에너지제품(예를 들어, 전기, 열 및 증기)을 포함하는 원자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조치	:	-

42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유보유형	: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 및 투자:</u></p> <p>싱가포르는 발효 중이거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서명된 모든 양자 또는 다자 간 국제 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싱가포르는 발효 중이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 서명된 모든 국제 협정에 따라 아세안 회원국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싱가포르는 발효 중이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 서명된 다음에 관한 모든 국제 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항공 서비스를 포함하는 항공 사안 (b) 해상 및 해상 사안 부수 서비스, 그리고 항구 사안 (c) 육로 운송 사안 (d) 우편 및 쿠리어 서비스 사안 (e) 통신 및 정보기술 사안 (f) 전자상거래 사안, 그리고 (g) 환경 사안 <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의 문구는 이 항에 언급된 관련 양자 또는 다자 간 협정에 대한 후속 검토나 개정에 따라 한 국가에 부여되는 모든 차등 대우까지 확장된다.</p>
	기준조치	:	-

43	분야	:	금융 서비스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유보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및 제 10.3 조)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및 제 10.4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싱가포르의 최혜국 대우, 이행요건 금지, 그리고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하여 금융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목록의 부록(금융 서비스에 대한 약속 - 싱가포르)에 명시되고 그 부록에 명시된 제한, 조건 및 자격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싱가포르의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준조치	:	-

44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유보유형	:	시장접근(제 8.5 조)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신용조회 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가 싱가포르에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획득되는 경우, 싱가포르는 신용조회서비스 공급자 수에 대한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공급자는 싱가포르에 설립되어야 한다.
	기준조치	:	싱가포르통화청법(제 186 장), 1999 년 개정

목록 B 부록
금융 서비스에 대한 약속

싱가포르

주해

이 부록은 부속서 III(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유보 및 비합치 조치 목록)의 싱가포르 양허표 목록 나 43번 유보항목과 함께 해석된다. 이 부록은 이민, 입국 또는 일시 체류를 포함하여, 자연인의 주재 또는 자연인의 그 밖의 이동에 의한 서비스 공급에 관한 싱가포르의 약속을 포함하지 않는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금융 서비스</p> <p>이 부록의 모든 약속은 GATS 제 6 조 및 GATS 금융 서비스 부속서 제 2 항에 합치하는 입국 요건, 국내법, 지침, 규칙 및 규정, 싱가포르통화청 또는 경우에 따라 그 밖의 싱가포르의 관련 당국이나 기관의 조건에도 적용을 받음.</p>			
<p>A.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p>			
<p>a) 연금, 장애소득, 상해보험 및 건강보험 서비스를 포함하는 생명보험 서비스</p>	<p>(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이 조치는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이기도 함.</p> <p>제한 없음. 다만 외국인인 현지 소유 보험회사의 지분을 최대 총 49 퍼센트까지만 취득할 수 있으며, 어떠한 외국인도 그러한 취득의 결과로 최대 주주가 되지 않아야 함. 보험회사는 지점 또는 자회사로 설립되어야 함. 그리고 투자를 통한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사회보장제도, 공적퇴직연금제도 또는 법정저축제도로부터 발생한 자금의 사용과 관련된 활동을 위하여 설립되어야 함.</p>	<p>(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b) 장애소득, 상해보험 및 건강보험, 그리고 신원보증보험, 계약이행보증보험 또는 유사한 보증계약보험을 포함하는 손해보험 서비스</p>	<p>(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다만, 책임보험인 자동차 제 3 자 책임보험과 근로자 재해보상보험은 싱가포르에서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음. (3) 외국인은 현지 소유 보험회사의 지분을 최대 총 49 퍼센트까지만 취득할 수 있으며, 어떠한 외국인도 그러한 취득의 결과로 최대 주주가 되지 않아야 함. 신규 보험회사 허가 및 신규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p>	
<p>c) 재보험 및 재재보험</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재보험사는 지점 또는 자회사로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 외에는 제한 없음.</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d) 중개 및 대리 서비스로 구성된 보험 중개</p>	<p>(1) 약속 안함.</p> <p>(2) 이 조치는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이기도 함. 대리인은 미등록 보험업자의 대리 역할을 하도록 허용되지 않음. 선주책임 상호보험에 의하여 보장되는 선주 해상책임 관련 보험 및 재보험 위험을 제외하고, 중개회사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해 주는 보험을 싱가포르 외 지역에 있는 보험회사에 가입 중개하는 경우 싱가포르통화청의 승인이 요구됨.</p> <p>(3) 이 조치는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이기도 함. 직접보험 중개회사⁸ 및 재보험 중개회사를 현지에서 구성된 자회사로 인정하는 것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약속 안함.</p>	
<p>d) 보험계리, 손해사정, 공동해손사정 및 자문 서비스로 구성되는 보험 부수 서비스</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⁸ 직접 보험 중개회사란 재보험 사업에 관련된 보험 상품 외에 일반 보험과 장기 상해 및 건강 보험에 관련된 보험 상품에 대하여 보험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 중개회사를 말한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은행 및 그 밖의 금융 서비스			
<p>a) 대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그 밖의 상환성 자금의 인수</p>	<p>(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이 조치는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이기도 함. 은행, 종금사 및 금융회사로 허가되거나 승인된 기관만 예금을 수취할 수 있음. 법정관리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될 때, 외국 금융기관에 자신의 본국의 예금자와 비교하여 외국 지점의 예금자에게 더 낮은 우선권을 주도록 요구하는 본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싱가포르통화청은 싱가포르 지점 예금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싱가포르에 있는 외국 금융기관에 적절한 차별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싱가포르통화청은 싱가포르 법에 따라 구성할 것을 외국 은행에 요구할 수 있음. 외국 은행, 종금사 및 금융회사의 설립 및 운영은 B.a)부터 B.l)까지 기재된 제한 요건 및 다음 제한 요건의 적용도 받음.</p>	<p>(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u>상업은행</u>: 외국 은행은 한 개의 사무소로만 운영할 수 있음(후방 지원 운영은 제외한다). 외국 은행은 사업장 외부에 현금자동입출금기 및 현금자동입출금기 네트워크를 설치하거나 신규 출장소를 설립할 수 없음. 모든 전자뱅킹 서비스의 제공은 약속 안함. 은행 및 출장소를 설립하고 이전하는 경우 싱가포르통화청의 사전 승인이 요구됨. 도매은행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정기예금만 수취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입출금계좌만 운영할 수 있음. 싱가포르 달러 예금의 경우, 1 회 예금이 25 만 싱가포르 달러 이상인 정기예금만 수취할 수 있음. 역외 은행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로부터 외환정기예금을 수취할 수 있음. 싱가포르 달러</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예금의 경우, 비거주자로부터 1 회 예금이 25 만 싱가포르 달러 이상인 정기예금만 수취할 수 있음.</p>	
	<p><u>상업은행</u> 종합은행 및 도매은행의 신규 설립이 불가함. 신규 외국 은행은 역외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로만 설립할 수 있음. 대표사무소는 사업을 수행하거나 대리점 역할을 할 수 없음. 은행은 싱가포르통화청의 승인을 얻어 비거주자만을 대상으로 외화 당좌예금 계좌를 운영할 수 있음. 단일 외국인 주주 또는 관련된 외국인 주주 그룹은 현지 은행 지분의 최대 5 퍼센트까지만 보유할 수 있음.</p> <p><u>종금사</u> 외국 은행 및 종금사는 종금사 자회사 또는 종금사 지점으로 설립될 수 있음.</p>	<p>싱가포르에 구성된 은행 이사의 과반수는 싱가포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함.⁹</p> <p><u>종금사</u> 종금사는 한 개의 사무소로만 운영할 수 있음(후방 지원 운영은 제외한다). 종금사를 설립하고 이전하는 경우 싱가포르통화청의 사전 승인이 요구됨. 싱가포르통화청의 승인에 따라, 종금사는 싱가포르 거주자 및 비거주자로부터 외화 자금을 모집할 수 있고,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외화저축계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들의 주주, 그들의 주주가 지배하는 회사, 은행, 그리고 그 밖의 종금사 및 금융회사로부터 싱가포르 달러 자금을 모집할 수 있음.</p>	

⁹ 싱가포르 외 지역에서 구성된 다른 당사자 은행이 전부 소유한 자회사로서 싱가포르에 구성된 은행의 경우, 싱가포르통화청은 싱가포르 시민권자나 싱가포르 영주권자인 그 은행의 이사의 수가 과반수 미만이 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u>금융회사</u> 신규 금융회사의 설립은 불가함. 외국인의 금융회사 지분 취득 및 기존 금융회사에 대한 외국인 보유 지분을 다른 외국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약속 안함. 현지 소유 또는 외국 소유의 모든 금융회사는 싱가포르 달러화로 이루어지는 사업만 수행할 수 있음. 싱가포르통화청의 사전 승인에 따라, 자격을 갖춘 금융회사는 외화, 금 또는 그 밖의 귀금속도 취급할 수 있고 외화로 표시된 증권, 주식 또는 채무증권이나 전환증권도 취득할 수 있음.</p>	<p><u>금융회사</u> 금융회사를 설립하고 출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싱가포르통화청의 사전 승인이 요구됨. 외국인 소유 금융회사는 사업장 외부에 현금출납기(ATM) 및 ATM 네트워크를 설치하거나 신규 출장소를 설립할 수 없음.</p>	
<p>b) 소비자대출, 주택담보대출, 팩토링 및 상업거래 용자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대출</p>	<p>(1) 약속 안함. 취해진 조치는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이기도 함. (2) 제한 없음. (3) 이 조치는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이기도 함. (i) 인하우스 신용카드를 제외한 신용카드 및 선불카드는 싱가포르통화청 지침에 따라 싱가포르통화청이</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각 역외 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싱가포르 달러 대출은 총 5 억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하지 않음. 역외 은행은 5 억 싱가포르 달러의 대출한도를 우회하기 위하여 그들의 관련 중금사를 이용하지 않아야 할 것임.</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승인한 신용카드 발급사에 의하여 발급될 수 있음.</p> <p>(ii) 비거주 금융기관에게 기관당 5 백만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하는 신용 공여를 제공하거나 비거주자에 싱가포르 달러화 주식 또는 채권 발행을 주신한 금융기관은, 싱가포르 달러 수익이 싱가포르 외 지역에서 사용될 경우 그 자금이 인출 시점에 또는 해외 송금 전에 외화로 스왑 또는 전환됨을 보장함. 싱가포르 달러 수익이 싱가포르 달러 환투기에 사용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은 비거주 금융기관에게 싱가포르 달러로 신용 공여를 제공하지 않음.</p> <p>(iii) 싱가포르 통화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신용 회사의 설립은 허용됨.</p>	<p>신용카드 및 선불카드 발급사의 사업장 외부 현금지급기 설치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p>	
<p>c) 금융리스</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상기의 B.b)에 기재된 행위 외에는 제한 없음.</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상기의 B.b)에 기재된 행위 외에는 제한 없음.</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d) 신용, 선불 및 직불카드, 여행자수표, 그리고 은행수표를 포함하는 지급 및 송금 서비스</p>	<p>(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이 조치는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이기도 함. 은행과 중금사에 의하여 송금 업무가 수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싱가포르 시민권자가 송금소 지분의 과반을 소유해야 함. 은행수표는 은행에 의해서만 발행될 수 있음. 싱가포르 통화청의 허가를 받은 싱가포르 내 은행만이 다목적 선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음. 위의 B.b) (3)에 기재된 제한은 B.d)에 열거된 행위에도 적용됨.</p>	<p>(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p>	
<p>e) 보증 및 약정</p>	<p>(1) 신용보증보험, 계약이행보증보험 또는 유사한 보증계약보험의 계약을 제공하는 보험회사의 활동이 기재된 A.b)에 기재된 제한 외에는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신용보증보험, 계약이행보증보험 또는 유사한 보증계약보험의 계약을 제공하는 보험회사의 활동이 기재된 A.b) 및 위의 B.b) (3) (ii)에 기재된 제한 외에는 제한 없음.</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f) 거래소,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음을 자기계좌 또는 고객계좌로 거래하는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금융상품(수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를 포함한다) - 외환 - 금융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하는 파생상품 - 스왑 및 선도금리계약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율 상품 - 양도성 증권 - 금괴를 포함하는 그 밖의 유통증권 및 금융자산 	<p>(1) B.f)에 열거된 상품을 자기계좌로 거래하는 것 외에는 약속 안함. 환율 및 이자율 상품뿐만 아니라 단기금융상품과 외환 거래는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수행할 수 있음. 취해진 조치는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이기도 함.</p> <p>(2) 제한 없음.</p> <p>(3) 이 조치는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이기도 함. 은행과 종금사는 고객을 위한 금융 선물 거래를 위하여 별도의 자회사 설립이 요구됨. 금융 선물 중개인은 지점 또는 자회사로 설립될 수 있음. 다음의 경우, 현지 및 외국 소유 금융기관 모두 파생상품 제공이 허용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상품이 그 밖의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금융센터의 금융기관에 의하여 제공되었고 그러한 센터의 감독 당국이 자국의 시장에서 그러한 상품을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상기 B.b)에 기재된 행위 외에는 제한 없음.</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금융기관의 모회사 감독자와 본점이 싱가포르 지점 또는 자회사에서 그러한 상품이 제공됨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 그 금융기관이 이러한 상품을 거래할 만한 재무건전성과 적절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앞으로도 갖추 것으로 싱가포르통화청이 인정하는 경우 <p>싱가포르 달러가 수반되는 파생상품 제공은 B. b) (3) (ii)에 기재된 요건의 적용을 받음.</p> <p>은행과 중금사가 환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싱가포르 시민권자가 환전소 지분의 과반을 소유하는 것이 요구됨.</p>		
<p>g) 주간사로서의 인수 및 모집을 포함하는 모든</p>	<p>(1) 싱가포르 내 증권중개회사, 은행 또는 중금사를 통한</p>	<p>(1) 제한 없음.</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종류의 증권 발행에의 참여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p>	<p>자기계좌로의 증권 발행, 증권 인수 및 모집에 참여하는 것 외에는 약속 안함. 취해진 조치는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이기도 함.</p> <p>(2) 제한 없음.</p> <p>(3) 취해진 조치는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이기도 함.</p> <p>싱가포르증권거래소(SGX-ST)는 신규 거래 회원을 허용할 것임. 신규 회원은 싱가포르에서 구성된 회사의 싱가포르 달러 표시 증권을 최소 20 만 싱가포르 달러부터 거주 투자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을 것임.</p> <p>대표 사무소는 사업을 수행하거나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없음. 외국인에 의한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회원사의 신규 및 기존 지분 취득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p> <p>은행 및 종금사의 싱가포르증권거래소 및 싱가포르선물거래소(SGX-DT) 회원 자격은 자회사를 통하여 유지되어야 함.</p> <p>싱가포르 정부 국채 전문 신규 딜러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상기 B.b)에 기재된 행위 외에는 제한 없음.</p>	
<p>h) 자금중개업</p>	<p>(1)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2) 제한 없음.</p> <p>(3) 신규 자금 중개인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취해진 조치는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이기도 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i)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 모든 형태의 집합투자운용, 연기금 운용, 보관, 예탁 및 신탁 서비스와 같은 자산 운용</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이 조치는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이기도 함. 자산 운용 회사, 보관, 예탁 및 신탁 서비스 회사는 지점, 자회사 또는 합작투자자로 설립될 수 있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중앙증권예탁원만이 전자 거래 시스템에 따라 증권 보관 예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님.</p> <p>그리고 투자를 통한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사회보장제도, 공적퇴직연금제도 또는 법정저축제도로부터 발생한 자금의 사용과 관련된 활동을 위하여 설립되어야 함.</p> <p>투자를 통한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사회보장제도, 공적 퇴직연금제도 또는 법정저축제도로부터 발생한 자금의 사용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j) 증권, 파생상품 및 그 밖의 유통증권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p>	<p>(1) 해외 거래소에만 등록된 금융자산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의 제공 외에는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이 조치는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이기도 함.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증권 및 금융 선물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는 각각 중앙증권예탁원 및 싱가포르선물거래소에서만 제공될 수 있음.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단일 청산소만이 싱가포르 달러 수표 및 은행 간 자금이체에 대한 청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약속 안함.</p>	
<p>k) 신용조회 및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 및 자문, 인수 및 기업구조조정과 전략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는 자문 및 그 밖의 금융 부수 서비스</p>	<p>(1)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 그리고 공중에 대한 자문 제공에는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p> <p>(2) 제한 없음.</p> <p>(3) 금융 자문사는 지점, 자회사 또는 대표사무소로 설립될 수 있음. 대표사무소는 사업을 수행하거나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없음.</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l) 그 밖의 금융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금융정보, 금융 데이터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p>	<p>(1) 로이터 및 블룸버그와 같은 제공자에 의한 금융 정보의 제공 외에는 약속 안함. 취해진 조치는 내국민 대우에 대한</p>	<p>(1) 로이터 및 블룸버그와 같은 제공자에 의한 금융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p>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제한 이기도 함.</p> <p>외국 은행의 싱가포르 지점은 처리를 목적으로 그들의 본점 및 자매 지점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음. 다만, 적절한 통제가 존재하여야 하고 데이터 및 정보의 무결성과 기밀성이 보호되어야 하며, 데이터 및 정보가 처리되는 장소에서 싱가포르통화청에 그 데이터 및 정보에 대한 현장 접근이 허용되어야 함.</p> <p>(2) 로이터 및 블룸버그와 같은 제공자에 의한 금융 정보 제공만이 허용됨. 취해진 조치는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이기도 함.</p> <p>(3) 로이터 및 블룸버그와 같은 제공자에 의한 금융 정보 제공이 허용됨. 은행 및 중금사에 대한 금융 데이터 처리 서비스의 제공은 은행 및 중금사 고객의 정보 비밀보호에 관한 국내법의 적용을 받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